

`23년도 대전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출기업 지원프로그램 2차 모집공고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6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전광역시장, 대전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60백만원 내외
-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총 4개사 내외 선발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최대지원 금액	지원기업 수
컨소시엄형	맞춤형 수출촉진 지원	• 시장조사, 바이어미팅, 샘플발송 등 지원	15백만원	4개사 내외
기업주도형	맞춤형 제품개선	• 구매의향서 기반 바이어 요구 제 품 개선 및 운송비 지원	15백만원	

- **(지원대상)** 대전에 본사를 둔 수출초보 및 수출주력기업 중 주력산
업 전·후방 관련기업

* 대전 주력산업 : 정밀의료바이오헬스산업, 물류·국방서비스로봇, 나노반도체산업

구분	소비재	산업재
수출초보기업	`22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22년도 수출액 30만불 이하
수출주력기업	`22년도 수출액 10만불~100만불	`22년도 수출액 30만불~300만불

* `22년 수출액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서 발급한 (직접)수출실적 증명서 기준

- 단, 본사가 타 지역 소재 및 도소매업 지원대상 제외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아래 지원제외 대상 참고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지원방법은 별첨 참고

2 신청방법

- DIPS 대전기업정보포털(<https://www.dips.or.kr>) 신청 및 접수
- 아래 절차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공고에 신청

절차		비고
[1단계]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해당사업 공고문 신청 버튼 클릭(사업공고 및 신청)	※ 회원이 아닌 경우, 기업회원 가입
[2단계]	주요항목 작성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록 (업로드) 완료 후 임시저장 또는 최종신청 (단, 임시저장은 최종신청이 아니므로 꼭 최종신청을 클릭 해야함)	※ 접수 마감일 18시 시스템 자동 마감 으로 반드시 마감시간 이전 최종신청 버튼 클릭

3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별첨의 공고문 확인하여 제출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별첨 공고문 확인
- **(평가기준)** 별첨 공고문 확인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프로그램 공통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1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1
5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TP 확인	2
6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가점 1점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사업자 등록증	1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부가세 및 각종세금(TAX)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참가신청기업은 10%이상 책정 필수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평가 후 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관련 정량수치 작성 시 기업별 2022년 결산 이 미확정 된 경우 '22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외의 수치는 가결산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선정평가 및 그 이후 최종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수치가 상당 부분 상이할 시(자격 부합기준 미달)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시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 지원기업의 경우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관리 등을 위해 매출, 수출, 신규고용 등 지원종료 후 2년간 성과 모니터링에 참여해야함
-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이 확인된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타 사업)으로부터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컨소시엄 구성 기업 간 사업 추진이 불성실 등 원활하지 않은 경우

[참고]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 4항 참고]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 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 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3년 6월 22일(목) ~ 2023년 7월 5일(수) 18:00
- 신청서접수 : 2023년 6월 22일(목) ~ 2023년 7월 5일(수) 18:00
- 사업설명회 : YouTube-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안내 참고

공 고	⇨	신청서 접수	⇨	통합공고 설명회	⇨	면담/현장 실태조사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	협약 체결
6.22~ 7.5		6.22~ 7.5		YouTube 사업 홍보자료 참고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프로그램별 별도 안내		선정 기업 안내

<사업설명회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IZGrLwUMpCM&list=PL8aofJXplutf5RVAIXGhx59ugm7MLIO4p>

7 문의처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지원대상	프로그램명	소속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수출초보기업 수출주력기업	수출기업지원	기업지원단 기업성장팀	이선희 과장	042-930-4852	shlee@djtp.or.kr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소속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지식정보팀	이광희 과장	042-930-4823	lkh6436@djtp.or.kr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수출전문기관 역량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 인식·역량 강화 및 수출활성화 도모
- (지원규모) 총 4社 내외 ※ 수출초보기업을 선정기업 내 50% 이상 필수 선정·지원
(지원대상) 대전에 본사를 둔 수출초보 및 수출주력기업 중 주력산업* 전·후방 관련기업

* 대전 주력산업 : 정밀의료바이오헬스산업, 물류·국방서비스로봇, 나노반도체산업

구분	소비재	산업재
수출초보기업	'22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22년도 수출액 30만불 이하
수출주력기업	'22년도 수출액 10만불~100만불	'22년도 수출액 30만불~300만불

* '22년 수출액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서 발급한 (직접)수출실적 증명서 기준

- 단, 본사가 타 지역 소재 및 도소매업 지원대상 제외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통합공고문 지원제외 대상 참고
- (지원내용)
 - 컨소시엄형 : 수출 민간전문역량 기관(업)에서 수출기업의 지원수요 및 보유역량에 맞춰 시장조사-마케팅-계약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가급적 단기간 내 수출실적 발생 가능 기업 중심 지원)
 - 기업주도형 : 바이어 요구 제품 고급화 지원 및 운송비 ※ 운송비만 신청 불가
 - ※ 지원유형(지원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이 상이 할 시 사전검토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잘 숙지하여 작성 필요
- (지원기간)
 - 컨소시엄형 + 기업주도형 : 협약일(8월초) ~ 10.31(화)

□ 상세 프로그램 내용

① 기업주도형 프로그램

※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보유한 기업(사업 신청시 필수 제출)

- 서비스(공급)기업을 활용하여 신규 수출희망품목 및 바이어 요구 맞춤형 제품개선 지원(과제선정기업이 서비스(공급)기업 직접 선택 및 계약)
- 개선 된 제품에 대해 바이어事務 발송 시 발생하는 운송비 지원

(단위 : 개사, 건, 백만원)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
기업 주도형	맞춤형 제품개선 및 제품 운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수출희망품목 및 바이어 요구 맞춤형 제품개선(운송비 포함) 등에 대해 해외수출조건부* 지원 *해외수출조건부는 구매주문서(P/O)로 확인 ※ 사업 지원기간 내 제품개선 및 수출 발생 완료되는 건에 한함 ※선정기업은 최종 평가 시 수출 증빙 필수 제출 ((직접)수출신고필증)	기업당 15백만원 이내 (제품개선+운송비)

* 구매주문서(P/O, Purchase Order)를 보유한 기업 중 제품 개선에 대한 바이어 요구가 있는 경우 및 제품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단, 전자우편(E-mail)으로 받은 단순 구매 의향 내역은 신청 불가

- 사업비 지급 : 총사업비는 서비스(공급)기업에 전액지급하며, 과제 종료 및 최종 평가 후 지급 ※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

② 컨소시엄형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단위 : 개사, 건, 백만원)

지원유형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
컨소시엄형	OKTA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KTA회원사↔수출기업 간 컨소시엄 ※수출친구맺기 사이트에서 OKTA회원 리스트 확인 (gbiz.okta.net) ○ OKTA회원증 및 중복참여제한 확인서 필수 제출 ○ 타당성 및 시장조사, 유통채널 입점대행, 해외인증, 바이어 미팅, 샘플구입 및 발송, 통·번역, 현지 마케팅, 홍보물 제작, 기술지원, 기타(협의) 	기업당 15백만원 이내 (메뉴판 내 패키지 지원)
	무역상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업)에 등록 된 전문무역상사↔수출기업 간 컨소시엄 ○ 한국무역협회에서 지정한 전문무역상사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업)에 등록 된 업체만 가능 ※ OKTA회원 무역상사형 참여 불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검색> http://ctc.kita.net/stc/search/TradeCategory.jsp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검색> http://www.exportvoucher.com/portal/sample/main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및 시장조사, 유통채널 입점대행, 해외인증, 바이어 미팅, 샘플구입 및 발송, 통·번역, 현지마케팅, 홍보물 제작, 기술지원, 기타(협의)) 	

-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한도(기업당)는 최대 책정 금액을 말하며,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한도 이내 책정 가능함
- 사업신청 전 수출전문기관(업)과 충분한 협의 및 계획 수립 후 수출지원프로그램 선택 필요. 또한,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또는 신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지급 : 컨소시엄 수행기관에 전액지급 ※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
- 프로그램 메뉴판 ※별첨의 OKTA형 지원한도와 상이하므로 모집공고 내 한도금액으로 작성

구분	지원내용	한도금액
타당성 및 시장조사	해외 현지 시장성 테스트	5백만원
유통채널입점대행	국가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대행 및 컨설팅	5백만원
해외인증	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 사업기간 내 인증서 획득 건만 인정 ※ 수출입/통관허가 등 일회성 허가는 불가	10백만원
바이어미팅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온오프라인 미팅 및 출장비 ※ OKTA활용형의 온라인 미팅의 경우 국가별 단가 확인	7백만원
샘플 구입 및 발송	수출주력제품 샘플구입 및 발송 ※ 단, 샘플구입비는 기업부담금 내 가능 ※ 수입국에서 소요되는 비용(수입통관, 운송비)은 제외	3백만원
통·번역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2백만원
현지마케팅	해외 현지 인플루언서 등 활용 SNS마케팅 등	5백만원
홍보물 제작	수출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지원	3백만원
기술지원	수출 활동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등	10백만원
기타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TP협의

컨소시엄 방법

유형	● 컨소시엄형	● 기업주도형
컨소시엄 대상 (수출전문기관)	수출전문기관(업) (OKTA, 무역상사)	신규수출희망품목 및 바이어 요구 제품개선을 할 수 있는 서비스(공급)기업
방법	기업 자체 발굴	기업 자체 발굴
협약 방식	(협약)TP⇔수출전문기관(업)⇔수출기업 (사업비지급) TP⇒수출전문기관(업)	(협약)TP⇔서비스(공급)기업⇔수출기업 (사업비지급) TP⇒서비스(공급)기업

※ 총 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 기업부담 필수 매칭(부가세 별도 기업부담)

예시) 지원금 15,000천원 일 경우 기업부담금(총사업비의 10%이상) 1,700천원 현금 매칭 시 총 사업비는 16,700천원

- 정부지원금 15,000천원 ÷ 0.9 = 16,666천원(총사업비) / ※만원단위에서 절상
- 16,700천원(공급가액) + 1,670천원(부가세) = 18,370천원(세금계산서 총 금액)

□ 평가절차 및 기준

- (1차)사전검토 : 참여제한 여부, 지원 자격(서류) 검토
- (2차)선정평가 : 제출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위한 발표평가

<컨소시엄형+기업주도형 수출기업지원프로그램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원의 필요성 (30)	지원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CEO)의 수출의지 • 본 사업 지원방식(전문역량활용)과 적합성
	수출 준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준비 진행 정도 (제품완성도, 매뉴얼, 홍보물, 포장, 해외인증, 홈페이지 등)
지원내용의 타당성 (50)	사업목표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수출) 목표의 명확성
	지원내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및 전략의 적절성 •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 수출전문기관(업)의 전문성(역량, 평판 등)
	사업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산출근거의 타당성
기대효과 (20)	수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 수행을 통한 수출실적 달성(단기간) 가능성
	사후활용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활용방안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 제출서류(모든 지원유형 해당)

- 접수서류 순서대로 압축(zip)하여 첨부파일 등록, 최종선정 기업대상 협약 필요서류 별도 제출 예정

*필요 서류 누락 시 사전검토에서 지원제외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서류 등록

구분	등록서류	비고
필수 제출	1 신청서(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등 포함) ※ 컨소시엄형+기업주도형 신청서(붙임2)와 전시회 참가 신청서(붙임3) 별도 파일	날인 必
	2 사업자등록증	-
	3 결산 재무제표('20, '21, '22년)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제출 가능 ※ 단, 22년 미결산 시 부가세증명원(국세청) 및 가결산 자료 제출(두가지 모두 제출해야함) ※ 설립 3년 이내인 경우 해당기간 재무제표만 제출	-
	4 '22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
	5 국세 납세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가능	-
	6 지방세 납세증명서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
	7 기업주도형의 경우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필수 제출	기업주도형
	8 중복참여제한 확인서 ※컨소시엄형의 OKTA활용형 신청 할 경우 필수 제출	OKTA활용형
해당시	9 수출 관련된 기타자료	-
	10 우대가점 증빙자료	통합공고문 참고

[참고] (주력산업 분야) KSIC 코드

주력산업 분야	번호	업종명	번호	업종명
① 정밀의료 바이오헬스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②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1	레이더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③ 나노 반도체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7219	기타측정 시험 항해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